

Doing Business in Thailand

KPMG in Thailand

Regulatory / Legal

법인의 형태

태국인 또는 외국인인 개인기업, 유한회사, 파트너십, 합작투자, 국외 기업의 지사, 지역 대표 사무소 등의 형태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입니다. 외국 투자자의 경우,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지사 형태의 법인보다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업운동을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특정 비즈니스는 별도의 인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태국 지분이 있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비즈니스 행위

외국인은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특정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습니다. (예: Foreign Business License) 규제대상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 건설업, 브로커 및 에이전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제조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규모와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원자재, 설비 및 투입되는 인력 수요에 따라 Factory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동에 따른 최소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태국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BOI)은 투자 촉진을 위해 승인된 사업분야에 대해 외국인과 태국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 및 세금 외 기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사업활동에 따른 순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법인소득세 50% 감면, 수입 관세 면제/감면이 있습니다.

기타 혜택으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토지 소유권, 그리고 비자 및 워크퍼밋 간소화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BOI에서 추진하는 투자촉진의 일환으로 I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IBC란 태국 내에 등록된 회사로서 매니저먼트 서비스, 기술 서비스, 지원 서비스, 관계사에 대한 자금관리 서비스 또는 BOI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 무역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IBC는 15회계연도 동안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금혜택에는 적격한 IBC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태국 내 비용지출금액에 따라, 법인세율을 8%, 5% 또는 3%로 감면하는 것과 관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외환 거래

외환거래는 일반 은행 또는 당국의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으로 반입 가능한 외환의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외국환을 태국으로 반입한 경우, 360일 이내에 바트화 하거나 태국 은행의 외환계좌에 입금 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 이자, 배당금, 이익금 또는 로열티 등의 국외 송금은 관련 증빙서류를 태국 내 인가된 은행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소유권

고용

예외 사항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일일 최저 임금은 지역에 따라 308~330 바트입니다.

일부 예외가 아닌 경우, 비태국 국적이 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워크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종류의 비자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법인(일반 회사, 지사, 지역 대표 사무소 등)은 사업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Calendar Year와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된 회계사로부터 감사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는 국세청과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Tax

법인소득세

표준 법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기업은 각 결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반기 신고는 반기(6개월)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율은 현재 7%가 부과되고 있으며, 0% 또는 면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월 단위이며, 다음달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금액으로 받거나 다음달 부가세 납부용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자, 배당금, 로열티, 용역비, 부동산 임대 등 특정 소득을 국내 또는 국외로 지급하는 태국 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징수,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인지세는 태국 세법의 인지세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차계약서, 주식 양도 계약서, 대출 계약서, 도급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특정 문서들은 태국 내에서 사용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태국 외에서 작성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이전가격정책 법안(TP Law)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가격 보고서를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관련 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서면 요청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최초로 공식요청을 받는 경우라면, 서면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잘못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KPMG 태국은 감사, 세무, 법무 및 자문의 각 서비스에서 한국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사업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및 전 세계 151개 국가에 분포되어있는 KPM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KPMG 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포함하여 총 3개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Korea 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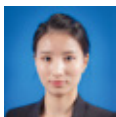


Vipaphan Chatupromwong (위파판)

Director, Tax & Legal

Tel: +662 677 2515

vipaphan@kpmg.co.th



배효경

Manager, Advisory

Tel: +662 6772000 x 4021

hbae@kpmg.co.th

home.kpmg/th/korea

KPMG Phoomchai Holdings Co.,Ltd.

48th Floor, Empire Tower,
1 South Sathorn Rd., Yannawa,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STAY CONNECTED



Twitter: @KPMG_TH

Facebook: facebook.com/KPMGinThailand

LinkedIn: linkedin.com/company/kpmg-thailand

home.kpmg/th

© 2019 KPMG Phoomchai Tax Ltd. a Thai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